

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第28回 臨時會
會期決定의件에 대하여 會期를 10月25일부터 10
月29일까지 5日間으로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
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이 있음)

예, 異議가 없으므로 第28回 臨時會 會期決定
의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다음은 議事日程協議의件에 대하여 異議가
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이 있음)

異議가 없으므로 第28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
의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3. 釜山直轄市沙下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
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(張昌祚議員外7人
發議)

(11時23分)

○委員長 趙龍根 議事日程 第3項 沙下區議會
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

上程합니다.

먼저 本 案을 發議하신 張昌祚 議員의 提案
說明이 있겠습니다.

○張昌祚議員 張昌祚 議員입니다.

本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
다.

1993年9月7日 大統領令 第13975號에 依據하
여 地方議會 議員의 出張業務를 원활히 遂行할
수 있도록 現地 交通費를 地域 區分없이 일률
적으로 支給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.

主要内容으로서는 現地 交通費를 갑지, 을지
等 地域의 區分없이 一律적으로 議長·副議長은
5,000원으로 하고 議員은 4,500원으로 調整하는
것입니다.

자세한 內容은 나누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해
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感謝합니다.

(參 照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196

발의년월일: 1993. 10. 15

발 의 자: 장창조의원의외7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 ('92. 9. 17)됨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

□ 주요골자

- 현지교통비를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(조례 별표 1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여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표 중 현지교통비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현지 교통비 (1인당)
5,000
4,5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
[별표 1]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현지 교통비(1일당)</th></tr> <tr> <td>의장</td><td>갑지 : 5,000</td></tr> <tr> <td>부의장</td><td>을지 : 4,500</td></tr> <tr> <td>의원</td><td>갑지 : 4,500 을지 : 4,000</td></tr> </table>	구분	현지 교통비(1일당)	의장	갑지 : 5,000	부의장	을지 : 4,500	의원	갑지 : 4,500 을지 : 4,000	[별표 1]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현지 교통비(1일당)</th></tr> <tr> <td>의장</td><td rowspan="2">5,000</td></tr> <tr> <td>부의장</td></tr> <tr> <td>의원</td><td>4,500</td></tr> </table>	구분	현지 교통비(1일당)	의장	5,000	부의장	의원	4,500
구분	현지 교통비(1일당)															
의장	갑지 : 5,000															
부의장	을지 : 4,500															
의원	갑지 : 4,500 을지 : 4,000															
구분	현지 교통비(1일당)															
의장	5,000															
부의장																
의원	4,500															